

박도원 행정법 강의계획서

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에 '박도원 행정법' 을 검색해보세요!

**“행정법 기출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추출훈련과 목차구성하는 법,
사안포섭하는 법을 철저히 훈련하여 사례풀이의 기초를 완성하는 강의!”**

■ ■ 담 당 박 도 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행정법 전공)
- 국회 법인 '여산재단' 감사
- 現) 한림법학원 5급공채 행정법 전임

■ ■ 강의일정 2025년 11/22(토) ~ 12/10(수), 총 16회, 월~토 강의
※ 주 3회, 1시간 / 50점 모의고사 진행됩니다.

■ ■ 시 간 [오후 실강반]

- 1) 시험이 없는 날: 1시 40분 ~ 5시 30분
- 2) 시험이 있는 날: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50분

■ ■ 강의교재 ▶ 주교재 :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제7판(2024년, 서점구매) + 최신기출해설(자료 제공)
▶ 부교재 : TRS 행정법 쟁점답안지 제6판(2025년, 서점구매)

■ ■ 강의목표

(행시 사례풀이 답안지쓰는법) 유튜브 QR코드:



유튜브에 수험에 필요한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 5급 공채 2순환은 1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수험생들이 2차 수험준비에 전념하지 못하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회차도 가장 짧습니다. 그렇다고 2순환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순환에서 기출사례를 접하며 그동안의 양적 학습을 질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중요한 순환입니다.
- 2) 1차 공부와 병행해야 하므로, 강의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강의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을 소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여 복습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3) 특히 2순환에서는 답안지 상담을 한번은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답안지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순환은 오전 내내 답안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답안지 상담 뿐만 아니라 행정법 사례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행정법의 내공을 사례실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차 부담이 커진 까닭에 2순환에서는 아침 도원결의 스티디는 진행하지 않고 대신 오전 내내 개별적인 답안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풀이의 포맷 완성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에 아직도 설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면 사례풀이의 기본포맷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안지의 논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차의 논리적 구성을 훈련하는 것이 2순환의 주된 과제가 됩니다.

2. 교과서의 양적 지식의 질적 전환

이번 2순환은 그동안의 양적 지식을 질적 지식으로 전환하여, 수렴적합적인 지식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출분석을 통해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논점추출과 사안포섭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3. 오전 답안지 상담 및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저녁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하루 3시간 답안지 상담을 실시합니다. 사례 답안지 쓰는 법이 처음인 분들은 개인 답안지 상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답안지 상담은 본인의 답안지와 다시 쓴 답안지가 있으면 ‘자신만의 최고답안’을 준비하여 제 개인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4. 답안지 압축자료와 TRS 학습법(3단계 연상학습법) 훈련

2순환에서 사례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잡아야 1차 시험 이후에 본격적인 2차 준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의고사 압축자료와 해당 자료를 3단계로 연상하는 리마인드 훈련을 통하여 “누적적 복습방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당부의 말씀

[2순환의 수험전략]

1. 들어가며

2순환 기간은 1차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습이 필요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2. 5급공채 2순환의 연습 우선순위

(1) 최우선 순위는 강의교재에서 기출문제를 읽고 쟁점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본문내용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을 읽고 본인의 이해도에 따라 강약을 표시하여 강의시간에 집중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 이해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유추해 보고, 옆에 그러한 생각을 정리하여 포스트잇을 붙여 놓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강의시간 또는 질문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은 부분을 다시 표시합니다.

본인의 논리를 글로 표현하는 훈련은 주관식 시험준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으로 내용이 쌓이면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이해가 어느 순간 답안지에 녹여지게 되고, 논리적인 고득점 답안지가 되는 것입니다.

(2) 사례집의 가벼운 체크가 끝나면, 1순환에서 봤던 교재에서 해당 쟁점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2순환부터 교과서는 쟁점을 찾아보는 용도로 주로 활용됩니다.

(3) 주관식은 결국 암기해서 써야 합니다. 암기의 순서로 첫째는 쟁점이름과 판례결론 및 논거, 둘째는 학설 이름과 논거, 셋째는 쟁점의 실익 등입니다. 본격적인 암기는 3순환의 과제가 되므로, 2순환에서 암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쟁점이름과 재판실무인 판례의 결론에 따라 사례의 답을 맞추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3. 5급공채 2순환의 학습목표

(1) 2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쟁점추출과 논리적인 답안지 작성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의고사 문제로 훈련한 수험생들이 나중에 동일한 쟁점이 다시 출제되었을 때 답안지 레벨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순환에서는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자신의 답안지로 흡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2) 모의고사 사례시험을 보면 당장의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답안과 압축자료 그리고 최고답안 3부를 참조하여 자신만의 최고답안(자최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최답에 키워드를 체크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나중에는 자최답을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순환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런 훈련을 하여 1순환 이후에 본격적인 2차 수험기간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3) 본격적인 암기는 3순환의 학습목표이므로 2순환에서는 적어도 설문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한 이후에 판례 또는 다수설에 따라 사례의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최근에 기출된 모든 행정법 사례문제는 모두 다뤄야 하고, 나머지 기출사례는 1차 시험 이후에 3순환에서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4. 마치며

5급공채 수험생들은 1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2순환 시기에 2차 과목에 전념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을 위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되는 까닭에 적어도 2차 시험 전에는 5급공채 기출사례 및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행정법 기출사례를 써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2순환에서는 주관식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훈련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학습전략을 수립하여 후회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할 수 있는 경지란 순간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와 내가 잇닿아 있는 마음의 상태. 수험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깨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례풀이의 기본공식

1. 설문의 내용 분석

설문의 내용은 판례의 사실관계로 구성되고, 이때 사실관계의 일상용어를 법률적 용어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설문에서의 원고 주장은 ‘상당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된다. 이때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강학상 ‘부작위하명’에 해당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묻는 질문인 경우에는 이러한 하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다는 것이 법률적 분석이 된다. 이때 공정력의 근거법규인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을 법적 근거로 언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앞으로 3순환까지의 학습과제가 된다.

2. 질문의 취지 분석

질문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질문의 취지를 읽어내는 것을 ‘쟁점 추출훈련’이라고 한다.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쟁점추출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쟁점추출에 실패하여 40점 이하의 과락이 대량 발생하는 행정법 시험의 결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설문내용의 법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질문에서 출제자의 객관화된 의사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통된 언어소통이 가능하기 위해 합의된 약속이 필요하듯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쟁점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합의된 약속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취지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협의를 소의 이익을 묻는 질문형태라는 합의된 약속이 있는 것이다. 합의된 약속을 무시하는 언어소통은 단절된 일방적 소통이 되는 것처럼, 답안지에 현출된 수험생의 주관적 사고가 객관화된 질문취지에서 벗어난 경우를 통상적으로 '쟁점이탈' 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쟁점 자체를 찾지 못하고 본인이 아는 쟁점만을 쓰는 경우를 '쟁점누락' 이라고 부른다.

3. 참조조문 분석

참조조문은 설문의 일부라는 말이 있다. 설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 사례를 풀어낼 수 없듯이 참조조문의 활용 없는 주관식 답안지는 반쪽짜리 답안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안지를 쓰는 수험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참조조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참조조문을 빠르게 체크하여 답안지에 옮길 부분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훈련하는 수험과정이 미흡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조조문을 활용하지 못하는 답안지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 간혹 불의의 타격이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 조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관련조문을 해석하고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1순환부터 그 기초훈련이 되어야 2순환 내지는 3순환까지 답안지 훈련을 통하여 참조조문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게 된다.

4. 사안의 경우(소결) 내지는 설문의 해결 쓰는 법

'법학의 주관식 답안지는 판례 쓰듯이 하라'는 격언이 있다. 판례는 삼단논법에 따라 조문과 종래 판례의 견해라는 대전제에 사실관계라는 소전제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마찬가지로 답안지에도 참조조문과 판례의 결론·논거에 따라 설문의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포섭의 3박자는 풍부한 사안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포섭의 3박자를 갖춘 답안지는 채점자에게 어필하는 고득점 답안지가 된다.

1순환에서 완벽한 포섭은 불가능하더라도 포섭의 3박자를 갖추는 답안지를 보는 안목은 길러야 한다. 이때 판례의 원문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판례의 포섭을 흉내내는 것이 풍부한 답안지를 쓰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 천번 이상을 넘어지는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답안지 쓰기에 도전한다면 이러한 2순환의 답안지 훈련은 3순환에서 고득점 답안지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11월 22일(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률유보의 원칙, 법의 일반원칙(자기 구속의 원칙, 비례원칙의 행정법 적용영역, 부당결부금지원칙)
■ 제 2 회	11월 24일(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위법성 확인, 효력 부인)
■ 제 3 회 (제1회 모의고사)	11월 25일(화)	법규명령, 행정입법의 통제,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제 4 회	11월 26일(수)	행정계획,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판단여지
■ 제 5 회 (제2회 모의고사)	11월 27일(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처분시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제 6 회	11월 28일(금)	행정절차의 하자, 내용에 관한 하자, 하자 승계,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 제 7 회 (제3회 모의고사)	11월 29일(토)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제 8 회	12월 1일(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명단공표, 절차의 하자, 정보공개법
■ 제 9 회 (제4회 모의고사)	12월 2일(화)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배상책임자, 행정상 손실보상
■ 제 10 회	12월 3일(수)	행정심판의 종류, 재결의 종류, 재결의 효력,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 제 11 회 (제5회 모의고사)	12월 4일(목)	대상적격, 원고적격(원고적격의 요건,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인인소송, 단체소송)
■ 제 12 회	12월 5일(금)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 제 13 회 (제6회 모의고사)	12월 6일(토)	일부취소, 사정판결,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 제 14 회	12월 8일(월)	정부조직법과 위임위탁규정에 근거한 위임/재위임 가능성, 권한대리,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제 15 회 (제7회 모의고사)	12월 9일(화)	공무원법, 임용요건 결여의 효과, 공무원 관계의 변경, 공무원 관계의 소멸시 권리구제, 공물의 사용관계
■ 제 16 회	12월 10일(수)	공용수용의 절차,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환매권,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경찰권 행사의 한계